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나라지킴이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공과금 실적 기간 명확화, 행명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 style="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『나라지킴이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p> 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                      『나라지킴이 적금』 (이하 "이 예금"이라 합니다)"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『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』과 『적립식예금 약관(구 하나은행)』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 ~ 제 7 조</b> (생략)</p> <p><b>제 8 조 이자 및 이자율의 적용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.2%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- 제3조 가입대상 1,2,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 1.5%                      - 가입기간 중 포상휴가를 받고 휴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가입기간 중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시하는 경우 또는 구 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공과금 1건 이상 자동이체 시 연 0.2%</p> <p>(자격증 : 내용 생략)                      - 본인 명의 현열증 제시 또는 금연 서약(금연서약서 작성)을 하는 경우 연 0.2%                      - 구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이 적금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급여 공제를 통해 이 적금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.3%</p> <p><b>제 9 조 ~ 제 10 조</b> (생략)</p>	<p style="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『나라지킴이 적금』 특약</p> 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                     “나라지킴이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합니다)"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적립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 ~ 제 7 조</b> (좌동)</p> <p><b>제 8 조 이자 및 이자율의 적용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좌동)                      ②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.2%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제3조 가입대상 1,2,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 1.5%                      2. 가입기간 중 포상휴가를 받고 휴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가입기간 중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시하는 경우 또는 이 예금 만기 전전일까지 KEB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공과금 1건 이상 자동이체 시 연 0.2%</p> <p>(자격증 : 내용 생략)                      3. 본인 명의 현열증 제시 또는 금연 서약(금연서약서 작성)을 하는 경우 연 0.2%                      4.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이 적금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급여 공제를 통해 이 적금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.3%</p> <p><b>제 9 조 ~ 제 10 조</b> (생략)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 <p>공과금 실적 기간 명확화</p> <p>행명 변경</p> <p>행명 변경</p>